#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(안)

| 의 안 번 호 | 1894 |
|---|---|

제출연월일 : 2019. 8. .
발 의 자 : 이영아 의원

## 1. 제정 이유

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기본방향 및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위탁 등 (안 제5조～제6조)

라. 공공시설의 이용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(안 제7조～제8조)

마. 포상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～제10조)

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 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년 8월 5일 ~ 8월 15일(1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8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(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)

## 9. 관련부서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#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(안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통일교육“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방향)**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.

1. 자유・평화・민주적 가치의 실현
2.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
3.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
4.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
5. 개인적・당파적・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, 행정적・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・시행)**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평화통일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

2.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, 개발, 보급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아동・청소년・청년・장년・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
5.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6. 공무원의 통일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
7.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통일교육의 위탁 등)**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재정적 지원은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공공시설의 이용)**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)**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·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9조(포상)**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・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 통일교육지원법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13.>

1. "통일교육"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
**제3조(통일교육의 기본원칙)**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.

② 통일교육은 개인적·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, 통일문제연구의 진흥,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,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·보급,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0. 19.>

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(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0. 19.>

**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** <개정 2018. 3. 13.>

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
## 기타 참고자료

# 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| 자 치<br>단체명 | 조 례 명 | 제개정일자 | 관련부서 |
|---|---|---|---|
| 경기도 |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| 2019-01-14 | 평화기반조성과 |
| 경기남양주시 |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| 2018-09-20 | 총무과 |
| 경기 안양시 |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8-11-16 | 자치행정과 |
| 경기 평택시 |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6-02-19 | 자치협력과 |
| 부산 서구 |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8-12-31 | 총무과 |
| 광주 남구 | 광주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| 2015-03-30 | 자치행정과 |
| 광주 북구 |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5-10-29 | 인권교육과 |
| 대구 서구 |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7-10-30 | 총무과 |
| 대전 대덕구 |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7-12-22 | 교육공동체과 |
| 대전 동구 |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7-12-29 | 총무과 |
| 대전 서구 |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7-12-18 | 자치행정과 |
| 대전 유성구 |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 | 2017-12-22 | |
| 대전 중구 |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8-10-15 | |
| 울산 북구 |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| 2018-12-13 | |
| 경상북도 |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| 2018-12-27 | 미래전략기획단 |
| 전라남도 |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| 2017-11-02 | 자치분권과 |
| 전남 나주시 |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6-01-11 | 총무과 |
| 전라북도 |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| 2016-09-30 | 자치행정과 |
| 전북 전주시 |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7-03-30 | 자치행정과 |
| 충북 증평군 |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| 2018-12-28 | 행정과 |